

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서정호

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의원 : 임영은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3년 5월 31일
- 회부일자 : 2023년 6월 2일

3. 개정이유

-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용어 및 적용조항 정비
 - 정보화 관련 용어를 상위법의 정의를 따르도록 함(안 제2조)
 - 정보화위원회 위원 범위 조정(안 제6조제3항)
 - 정보화책임관 업무로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의 역할 및 업무를 추가(안 제7조제1항)
- 정보화 발전 유공자의 포상 근거조항을 신설함(안 제19조)

5. 검토의견

-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정보화 관련 용어를 비롯한 개정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를 정비해 해당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- 조례명과 조례 내용상 확인되는 “충청북도”라는 고유명사 자체가 ‘지역’이라는 범위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굳이 지역정보화라는 중복적인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바, 제명과 조례 제1조 내지 제10조의 내용 중 지역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지역정보화→정보화로 변경하였음.
- 안 제2조제4호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내용 중 노령자 등→고령자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로 변경한 것은, 「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」상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내용과 일치시킨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안 제19조에 정보화 발전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·단체 등에 대하여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정보화 발전을 활성화하고 장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음.

붙임 :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